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84
----------	------

2021년 6월 18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5월 28일, 이동현 의원
2. 회부일자 : 2021년 5월 31일
3. 상정일자
 - 제301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1년 6월 18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동현 의원)

1. 제안이유

-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학교 기숙사의 인권 친화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입학학생자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1년 5월 28일 이동현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484호로 발의되어 2021년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사학생의 인권보장 및 학업편의를 도모하는 등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최근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됨에 따라 이러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학생 선수 기숙사 등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¹⁾

[표-1] 학생 선수 기숙사 운영 현황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교 수	1교	26교	27교
학생 수	36명	562명	598명

1) 「학교체육 진흥법」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③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외 훈련장(학교운동부지도자실 및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2.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복도·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3.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1. 4. 20.]

[표-2] 일반 학생 기숙사 운영 현황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학교 수	4교	32교	2교	38교
학생 수	186명	5,120명	103명	5,409명

○ 현재 서울시 관내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62교로 학생 선수 기숙사는 27교, 일반 학생 기숙사는 38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바²⁾,

[표-3]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 중 인권침해요소 규정

구 분	규정
핸드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점) 휴대폰, 전자 기기 무단 사용 -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갤럭시 탭, DMB 등은 18시 이후 절대 사용할 수 없다. - 휴대폰 사용 시간을 엄수한다.(부모 동의하에 사감이 취침시간 동안에 보관) - 생활실에 전자기기 반입이 불가하며 불시에 검사활동에 동의합니다. (휴대폰, 노트북, 테블릿PC, PMP 등) - 취침시간 이후부터 아침 기상전까지 핸드폰 보관함에 핸드폰을 보관하여 호실 내 타학생의 취침권을 보장되도록 운영하는 것에 서약합니다.
점호 관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에 등교하는 날의 점호는 오전 06시, 저녁에는 23시 00분에 실시하며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의 아침 점호는 오전 07시, 저녁 점호는 22시에 실시하며 점호 이후 외출은 불가능하다. 3. 점호는 기숙사 생활의 시작이며 기본이므로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태도를 바르게 한다.
이성교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사) 선,후배 동기 사귀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일부 학교의 기숙사 운영규정에 ① 핸드폰 압수 또는 사용 제한 ② 군대식의 점호 실시 ③ 이성교제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인권침해요소로 보고 시정을 권고해오고 있습니다.³⁾

2) 3교는 일반 학생 기숙사와 학생 선수 기숙사를 함께 운영함.

3) 보도자료 : '인권위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 통신자유 침해"'(연합뉴스, 2017.11.17.)

- 이처럼 현재 기숙사 운영 등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부재로 기숙사 내에서 여전히 학생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동 조례안이 합리적이고 학생인권에 부합하는 기숙사 운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칙 규정으로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을, 본칙 규정으로 예산 지원(안 제4조), 운영계획의 수립(안 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6조), 입사학생자치회의 구성 등(안 제7조), 운영규정(안 제8조), 입사학생 선발(안 제9조)을 규정하는 등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교육감의 책무에 대한 검토(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부합하는 기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숙사 입사학생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12년에 제정되었는바, 안 제3조에서 기숙사 운영 전반에서 동 조례의 취지⁴⁾에 부합하도록 학생의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입사학생자치회 및 기숙사 운영규정에 대한 검토(안 제7조 및 제8조)

- 안 제7조에서는 학교장이 입사학생자치회의 구성 및 활동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에서는 학교장이 기숙사 운영규정 제·개정 시 입사학생 또는 입사학생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는 학교장이 학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⁵⁾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 권리’와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별첨 관계법령 참조)
- 따라서 안 제7조 및 제8조가 입사학생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 및 다른 조례의 규정 취지를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기숙사 운영 전반에 있어서 입사학생의 참여와 권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도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8588, 2021.6.4.).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5)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Ⅶ.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학교의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숙사 입사학생의 인권보장 및 학업편의를 도모하여 즐거운 기숙사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기숙사”란 학교에서 기숙의 목적으로 건축되어 감독청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숙사 입사학생(이하 “입사학생”이라 한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권 친화적 기숙사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숙사 운영학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계획과 기숙사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여 입사학생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교 기숙사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숙사 운영계획의 수립)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2항의 기숙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숙사 연

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기숙사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① 학교의 장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
2. 운영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3. 제8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규정
4.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 입사학생의 보호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7조(입사학생자치회의 구성 등) 학교의 장은 입사학생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기숙사 생활을 위하여 입사학생자치회의 구성 및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기숙사 운영규정) ① 학교의 장은 입·퇴사 절차, 시설 및 위생관리, 생활지도 등에 관한 기숙사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기숙사 운영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입사학생 또는 입사학생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입사학생 선발) 학교의 장은 입사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원거리통학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